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29-06

ISSN 2287-2752

1월의 법제 소식

vol. 6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법제처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Policy on Korean Peninsula

열린 정책!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생각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듭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평화' 최우선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

'상호 존중'의 정신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지향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 방법
-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의견' 코너에 의견 게시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제안' 코너에 의견 게시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의견 담당자' 앞으로 편지

통일부

1월의

법제 소식



02 **심사경과보고서**_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아동수당법안 |
아동수당법 제정관련 심사쟁점 및 심사안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관련 심사

14 **법령해석 사례**_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1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_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29 **최근 입법동향**_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항만 및 해양주변 지역의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

36 **행정심판 재결례**_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44 **조세심판 결정례**_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48 **헌법재판소 결정례**_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5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_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다자녀가구

68 **새 법령 소개**

76 **법제소식**

84 **이용안내**

법제소식
2018년 1월호 (통권 제 68호)

발행처 | 법제처
발행인 | 김외숙
편집 | 대변인실(044-200-6513)
발행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법제처)
제작 |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발간등록번호 | 11-1170000-000429-06

아동수당법안

아동수당법 제정관련 심사쟁점 및 심사안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아동수당법 제정 관련 참고 법률

● 아동수당법은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을 구성하였음.

아동수당법 심사안	참고 법률
제1조(목적)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기초연금법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7조(조사 · 질문 등)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 · 질문 등)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조사 · 질문)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기초연금법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제11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제12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3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제14조(신고)	기초연금법 제18조(신고)
제15조(아동수당의 환수)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16조(환수금의 고지 · 독촉 및 징수)	
제17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8조(이의신청)	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의신청)
제19조(시효)	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제20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기초연금법 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21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기초연금법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기초연금법(권한의 위임 · 위탁)
제23조(벌칙)	기초연금법 제29조(벌칙)
제24조(과태료)	기초연금법 제31조(과태료)

● 안 제11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는 유사 입법례는 없으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호자를 변경하는 조치로서,

–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를 보호자가 아닌 해당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원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안을 작성함.

심 사 안

제11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원안 제4조제1항)

1. 원안의 내용 및 취지

● 원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그 지급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 소관 부처에서는 대통령령의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제외) 및 재외동포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원 안
제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말한다)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대상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3. 검토의견 및 심사안

● 당초 심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등을 법률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 소관 부처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법률에 두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① 외국에서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상호호혜주의의 관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기가 곤란함.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난민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등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하여 아직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바가 없음.

●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으나, 아동수당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안을 작성함.

원 안	심 사 안
제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말한다)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② (삭 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규정 (원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후단)

1. 원안의 내용 및 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함.

원 안
제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아동수당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이하 "수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생 략)

● 소관 부처는 원안 제4조제2항을 두려는 이유를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므로 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 원안 제9조제5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향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함.

2. 검토대상

● 원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내용을 법률에 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나,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자칫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바, 해당 규정을 반드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검토의견 및 심사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원안 제4조제2항 후단을 둘 필요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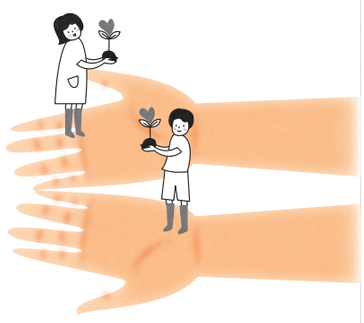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 · 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 지급 수준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협의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안 제4조제2항 후단 없이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으로 보임.

● 한편, 원안 제4조제2항 전단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 내용임.



심사경과보고서

※ 원안 제4조제2항 전단 관련 판례

1)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 이 사건 조례안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군민 개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을 금지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조례안의 공공요금 일부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 이 사건 조례안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일정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닌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금 지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2006.10.12, 선고, 2006추38,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 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 ·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관련 해석례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법제처 09–0770. 2009.5.2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고 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따라 특정 사항을 규율할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소관 부처에서는 심사의뢰안 접수 이후, 특히 제4조제2항 전단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다른 유사 입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과의 균형성, 관련 부처(행정안전부)의 이견 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해 옴.

– 이에,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원안 제4조제2항 전단 · 후단을 삭제함.

2) 아동수당의 현금 외 지급 방법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 현금 외의 고향사랑상품권의 지급 방법 및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원안 제9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원안 제9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안을 작성함.

원 안	심 사 안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아동수당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이하 "수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③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아동 수당 지급의 방법 ·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관련 심사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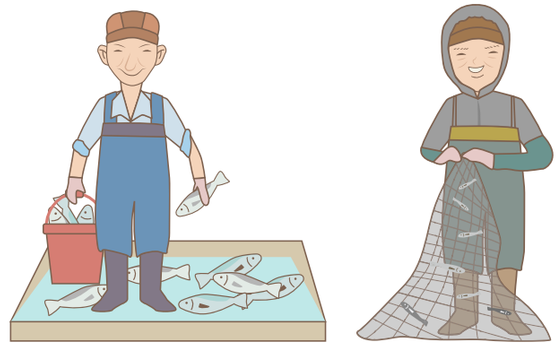
■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의 금지(원안 제2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가. 원안의 내용 및 취지

● 원안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의 경우 포획할 수 있는 어종 외 멸치 등이 자연적으로 혼획되는 것은 허용하되, 해당 혼획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조업구역 및 어법상 멸치의 자연혼획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멸치의 자연혼획시에도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허가 어업으로 처벌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어업인의 불만을 반영하여, 멸치를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을 입안한 것이라는 설명임.



심사경과보고서

현 행	원 안 (입 법 예 고 안)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 조건) ① ――――――

질의제목

민원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안건번호 : 법제처 -17 - 0563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법령해석'에서 관련내용을 검색·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1. 질의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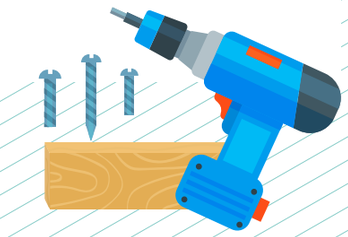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른 무게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은 충족하는 콘크리트구조물(무게 276톤, 부피 120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140제곱미터)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만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공작물에 대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문언상 열거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제목

경기도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17 – 0301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자치입법지원 – 의견제시 사례'에서 관련내용을 검색·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 질의요지

가.「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 각서를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다.「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라.「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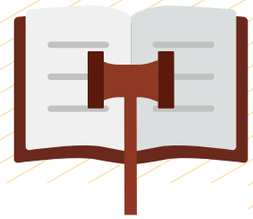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제6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제8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10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함)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등"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 영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경우(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수원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제1호),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등을 철회하려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 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 개최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교류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이러한 자매결연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법제처 2017. 6. 15. 의견제시 17-0144 참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10. 24. 의견제시 14-0234 참조),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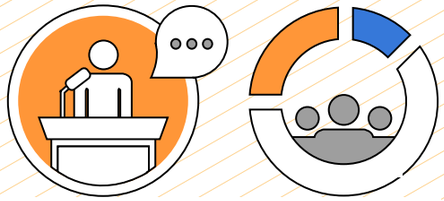
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면 그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협약등"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다른 국내외의 기관 · 단체 등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협약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렵고(법제처 2016. 6. 17. 의견제시 16-0149 참조), 특히, 협약등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등 수원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 그 협약등은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수원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 설치를 허



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 본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 · 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판단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이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영구시설물 중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수원시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이 영구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별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하는 시점에 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 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은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수원시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내용은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체결한 협약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고, 수원시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의 경우 협약서 등에 수원시의 예산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인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수원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 철회하는 경우에도 예산 및 결산 등에 있어 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수원시 협약등의 취소 · 철회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협약등의

체결 후 그 결과에 대한 시정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참조).

따라서,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및 해양주변 지역의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 입안 배경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과 어선(25%)으로부터 배출된다고 한다. 이를 항만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선박 배출량의 27%,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고, 이를 다시 행정구역별로 선박의 배출비중을 구분하면 부산 47%, 인천과 울산 각각 9%라고 한다.

또한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연간 17만톤에 달하고, 전국 해역에는 유기물과 중금속 오염물질을 함유한 퇴적물이 약 8백만톤 쌓여있고 이로 인하여 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물론 해수욕장까지 폐합판이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23일 강병원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6월 21일 김성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이러한 항만에서의 대기오염 관리와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의된 법안이다.



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대기관리권역 지정(안 제9조)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안 제10조)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대기관리권역 안의 사업장 관리(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 · 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행정 · 공공기관은 토목 · 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

4. 대기관리권역 안의 항만 등의 관리(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 · 도 지사는 시 · 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Ⅲ |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

2. 폐기물의 해양배출 원칙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해역에서 배출하는 경우
-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해역관리청에 보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고립처분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경우

3.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역관리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수거명령(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해안가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부유폐기물을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도록 하되, 부유폐기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침적폐기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또는 정화명령 (안 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하되,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해양환경 유해물질 사용허가(안 제19조)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6. 폐기물 해양배출업,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업의 등록제 도입 등 (안 제20조 및 제26조)

가.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7. 해양폐기물 정보 등의 디지털화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Ⅲ | 입법전망

두 법안은 제정형식으로 발의되었으나 유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전국의 항만 중 대기오염정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확대 ·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도 해양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처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후 재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법률은 제정과정에서 각각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항만주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주변의 정확한 오염정도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정도를 2018년 3월까지를 목표로 정밀조사하고 있는데, 정밀조사가 종료되면 이를 근거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도 ○○시 ○○구 ○○로 253, C동 ○○○호(○○동, ○○○○○○)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심판청구일	2017. 3. 7.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2. 17. 청구인에게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아오던 중, 2015년도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인 2016년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는 2016. 5. 3. 사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이하 '분할 후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의 일부를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면서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에 앞서 2016. 3. 15. 피청구인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와 같이 설립이 예정되어 있던 청구인 회사로 승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6. 3. 22. 위 승계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 1. 31. 2016년도 상시사용근로자수를 평균 534.625명으로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17. 2. 17. 청구인 회사의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이 초과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16년 5월 ~ 9월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27,235,450원을 9,000,000원으로 재산정하고, 초과 지급된 18,235,450원에 대하여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② 이 사건 분할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의 '그 규모의 확대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간주기간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바 분할 전 이 사건 회사가 누리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는 공법상의 지위도 승계하고,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청구인에게 신뢰를 주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④ 설사 청구인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국가의 보육정책에 부응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한 청구인 회사에 대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회사는 2016. 5. 3. 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당시 상시사용근로자수는 534명이고, 산업분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계는 분할 후 이 사건 회사가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여 이어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위 또한 존속분할회사인 분할 후 이 사건 회사로 승계가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로 지원한 254,220,000원에 대해서는 양도를 승인하여 지원취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8조, 제56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7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 제35조, 제3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분할계획서, 사업장 분할에 따른 지원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양도 승인공문,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 의견제출 요청공문, 정보통신망 이용 송 · 수신내역, 정보공개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는 1987. 7. 19.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6. 5.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사명을 '주식회사 ○○○(○○○○○ Co., Ltd.)'에서 '주식회사 ○○○○○○(○○○○○ ○○○○○○ Co., Ltd.)'로 변경하여 지주회사로서 투자, 보톡스, 브랜드 사업을 담당하고, 동시에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면서 청구인 회사(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사업회사로서 의약품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Co., Ltd.)', 회사성립연월일은 '2016년 5월 3일', 본점은 '○○도 ○○시 ○○구 ○○로 253, 씨동 ○○○호', 목적은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대표이사는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에는 '주식회사 ○○○를 분할하여 설립 2016년 5월 3일 등기'이고, 분할 후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 Co., Ltd.)', 회사성립연월일은 '1987년 7월 10일', 본점은 '○○도 ○○시 ○○구 ○○로 253, 씨동 ○○○호', 목적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 대표이사는 '○○○, ○○○'이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11. 4. 185,340,000원을, 2015. 3. 17. 68,880,000원(합계 254,220,000원)을 각각 지원을 받아 설치 · 운영하던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을 청구인 회사로 승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3. 22.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평균 상시사용근로자수는 2016년도에 '534.625명'이고, 분할 전 · 후 이 사건 회사의 평균 상시사용근로자수는 2014년도에 '492명', 2015년도에 '539명', 2016년도에 '230.5명(1월부터 4월까지는 500명에서 550명사이이고, 이 사건 분할 이후인 5월부터는 12월까지는 50명에서 70명사이임)'이다.

마. 분할 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5. 11. 피청구인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관계를 승계하는 취지의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계획서의 권리 · 의무 승계범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 5. 3. 법인 분할 · 설립에 따라 기운영중이던 직장어린이집을 인계받은 ㈜○○○는 대기업에 해당함
  - 2016. 5월 ~ 9월까지 직장어린이집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귀사에 지급된 지급금 18,235,450원에 대해 회수결정 하고자 함
- 처분 내용
  - 직장어린이집지원금 부당이득금 환수
  - 반환액 : 18,235,450원
- 의견제출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기한 2016년 12월 5일(월) 18:00까지

아. 피청구인이 2017. 3. 2.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사항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발송시각은 '2016. 11. 28. 18:28:47'으로, 수신시각은 '2016. 11. 28. 20:39:51'으로, 해당공문의 수신인은 '㈜○○○ 인사팀 ○○○ 과장'으로, 수신인 전자우편주소는 '○○○○○2016@○○○○○○○○○○○○○.com'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송·수신내역에 따르면 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메일의 제목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 의견제출 요청공문'으로, 상태는 '메일읽음'으로 되어있고, 위 ○○○ 과장이 2017년 1월경 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전자우편계정(○○○○○○○○○○○@○○○○○○○.or.kr)으로 청구인 회사 직장어린이집 대표이사 변경신고, 직장어린이집 승계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3회 전자우편을 발송한 내역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7. 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6년도 10월 ~ 12월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금 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장명	㈜○○○				
지급대상	2016년10월~ 12월분		인건비(지원대상자 수 : 3명)		
결정내용	신청액	5,400,000원 (600,000원 × 3명 × 100% × 3개월분)	결정액	5,400,000원 (600,000원 × 3명 × 100% × 3개월분)	
	정상지급				
지급일자	2017년 2월 16일(실지급액 0원)				
비고	2016년 10월 ~ 12월분 인건비 지원결정액인 5,400,000원은 기결정된 회수결정액 18,197,800원에서 상계처리하였으며, 차액분 12,797,800원은 회수처리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밖에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4)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1,855일로 하나, 산업단지ㅇㅇㅇ 직장어린이집은 2,585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단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위 채권관리 기간 내에 위 보험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 양도 · 대여 ·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하는데, 다만 지원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휴원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물품을 사업의 합병 · 분할 · 이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업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매 · 양도 · 기부하거나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5)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계는 분할 후 이 사건 회사가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여 이어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위 또한 존속분할회사인 분할 후 이 사건 회사로 승계가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지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에 대해서는 양도를 승인하여 지원취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장이 신설되는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 · 분할과 같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인 포괄승계를 통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관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는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고용안정 ·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 및 사업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현 시점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이는 점, ③ 직장어린이집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분할 후 이 사건 회사가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존속회사로서 보험관계 등을 승계하였으나, 상시사용근로자수 내역에 비추어 분할신설회사인 청구인 회사가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청구인 회사가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를 승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 제36조제1항제3호에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을 양도한 경우 피청구인은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하나, 다만 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시설을 사업의 합병 · 분할 등을 사유로 다른 사업주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는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이 사건 분할을 사유로 청구인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피청구인이 승인한 점,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합병의 경우도 위 규모의 확대 등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존에 누려오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는 분할 전 이 사건 회사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청구인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기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던 기업인 분할 전 이 사건 회사가 분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근로자를 승계한 청구인 회사를 남은 유예기간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사 건	조심 2017지○○ (2017.11.6.)
세 목	취득세
결 정 유 형	취소

주문

○○시장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XX.XX.XX. ○○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XX.XX.XX.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XX.XX.XX. 청구인에게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친언니(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임차인이 20XX.XX.XX.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 내 주소지가 필요하여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이 건 주택은 계속하여 임대에 제공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임대 외의 사용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타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가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4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⑤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3)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 부터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추징사유로 들고 있는 임대 외의 사용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도 포함되는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의 거주라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5 판단

청구인이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카드가 배우자 · 자녀들의 주민등록지인 ○○ 등에 소재한 음식점 · 편의점 등에서 거의 매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회에 걸쳐 ㅁㅁ 소재의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한 이상 청구인이 형식적 · 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최초로 임대한 후 계속하여 임차인이 매월 **만원에서 **만원을 입금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 주택이 지속적으로 임대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글.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 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종 국 결 과	인용(위헌확인), 각하

이 유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 충분하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과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를 요구한 행위, 피의자신문 후 피의자와의 접견을 불허한 행위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각하]

1 사건개요

2015헌바239 사건

○ 변호인인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은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라 한다),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의 오른쪽 뒤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고, 피청구인과 함께 있던 다른 수사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별지 1호 서식인 변호인 참여신청서를 출력해 주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피청구인에게 피의자와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묻자,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시 저녁 6시가 넘은 상태였으므로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 피의자에게 다음 날 오전 구치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접견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이 변호인인 청구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2005. 6. 20. 시행 대검찰청 지침)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2005. 6. 20. 시행 대검찰청 지침)

제5조【변호인의 좌석】①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6. 4. 21. 17:15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과 2호실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4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행사성]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잠재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여 변호인의 역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피의자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항의할 경우 피청구인이 퇴실을 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보충성]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권리보호이익]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종료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후방착석요구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헌법적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는 행위의 한계를 확정짓는 것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문제에 해당하므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변호인의 변호권)

○ 변호인의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하 '변호인의 변호권'이라 한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하여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

다.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적극)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인하여 위축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를 정당화할 그 외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얻어질 공익보다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자유로운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한다.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

○ 청구인은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에 따라 수사관이 출력해 준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임을 밝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

○ 청구인이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피의자에게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접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지침

○ 이 사건 지침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별개의견**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변호인의 변호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법정의견이 변호인의 변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

▫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보충의견**

○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는 헌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헌법 제12조 제4항 등에 의해 보장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별도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관하여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창종의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반대의견(각하)**

[공권력행사성]

○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지침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거나 신문참여과정 중에서도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를 하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한 후, 당초 피청구인이 앉도록 요구한 좌석에 앉지 않고, 그보다 앞쪽으로 피의자와 더 가까운, 피의자 뒤 오른편 대각선 위치에 다른 의자를 옮겨 앉아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므로 수사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부득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퇴실을 명하는 것은 명백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퇴실을 당할 염려도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권침해가능성]

○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이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과 같은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는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만 근거를 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다수의견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인하여 변호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받은 경우에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지

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참여한 2016. 4. 21.자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보충성]

○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이 새로 추가되었다.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참여와 관련하여 그 좌석 위치를 지정하여 그곳에 앉을 것을 요구한 것이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정한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권리보호이익]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바에 부합하는가' 라는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후방착석요구행위를 하면 곧바로 변호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피의자신문 장소의 크기와 여유 공간의 위치,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한 동기와 경위,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착석할 것을 요구한 위치가 피의자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개개의 사건에서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과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여부의 문제는 단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규정된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문제, 즉 '위법성의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

○ 따라서 설사 일부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사방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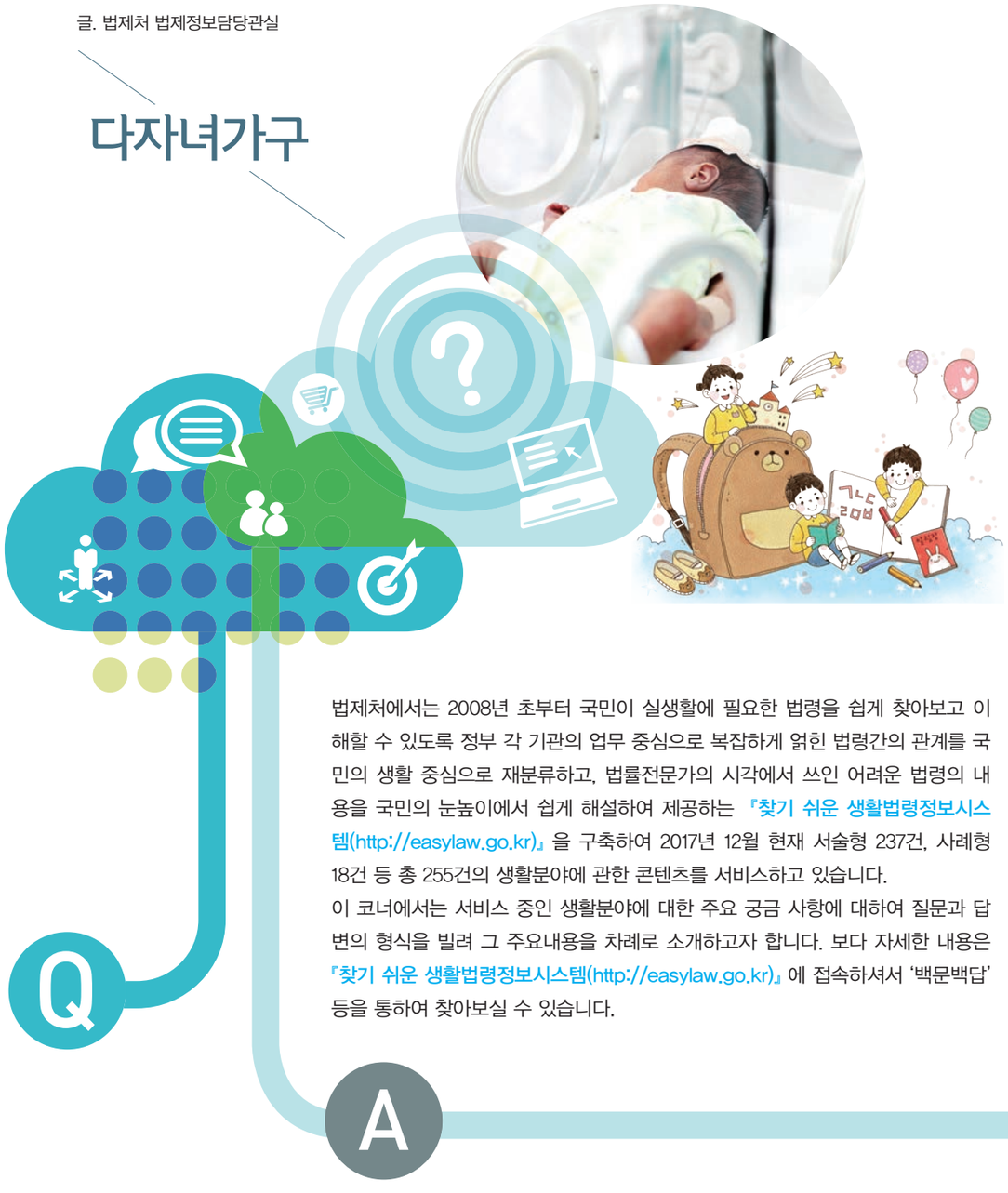
※ 위 결정례 이외의 다른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선고사건 – 최근 주요 결정'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다자녀가구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을 구축하여 2017년 12월 현재 서술형 237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5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A

Q1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의 자녀가 있어야 다자녀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A1 "다자녀가구"란 적용되는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2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둘째 또는 셋째 이상 출생자녀에게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2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2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 · 양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A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을, 「모자보건법」에서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참조].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내용으로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p.281 참조).



구 분	내 용
지원범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ABR 본인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p.206 참조).



	구 분	내 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지원액 – 2.5kg 미만~ 2.0kg, 2.5kg 이상 37주 미만: 5백만원~ 10백만원 – 2.0kg 미만~ 1.5kg : 7백만원 – 1.5kg 미만 :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를 지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 다만,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지원 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를 지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 다만, 최고 지원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Q3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3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지원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 및 별표 2).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Q4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궁금합니다.

A4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항목별 배점기준에 맞는 점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구 분	요 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3호다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

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8호, 2017. 1. 19. 발령, 2017. 1. 20. 시행) 제2조 및 별표].

구 분	요 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본문).

- 공급신청자의 나이
- 부양가족의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임원 제외)인지 여부
-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 여부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

구 분	요 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3호다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8호, 2017. 1. 19. 발령, 2017. 1. 20. 시행) 제2조 및 별표].

구 분	요 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다자녀가구로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본문).

- 공급신청자의 나이
- 부양가족의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 자녀 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임원 제외)인지 여부
-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 여부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Q5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5 다자녀가구의 경우 ① 어린이집 우선입소, ② 보육료 지원혜택 및 ③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각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보육료 지원혜택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307~309 참조).



■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자격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430,000	344,000
			만 1세반	378,000	302,000
			만 2세반	313,000	250,000
			만 3세반	220,000	–
			만 4세반	220,000	–
			만 5세반	220,000	–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7호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5호, 2016. 12. 30. 제정, 2017. 1. 1. 시행) 제2조제3항).

(단위: 시간당)

소득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6,500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나형	85% 이하	6,500원	2,925원	3,575원	–	6,500원
다형	120% 이하	6,500원	1,625원	4,875원	–	6,500원
라형	120% 초과	6,500원	–	6,500원	–	6,500원



Q6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6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자녀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국민연금 수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자녀세액 공제제도

■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공제금액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2항).

자녀 수	공제금액
2명 이상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합한 금액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제19조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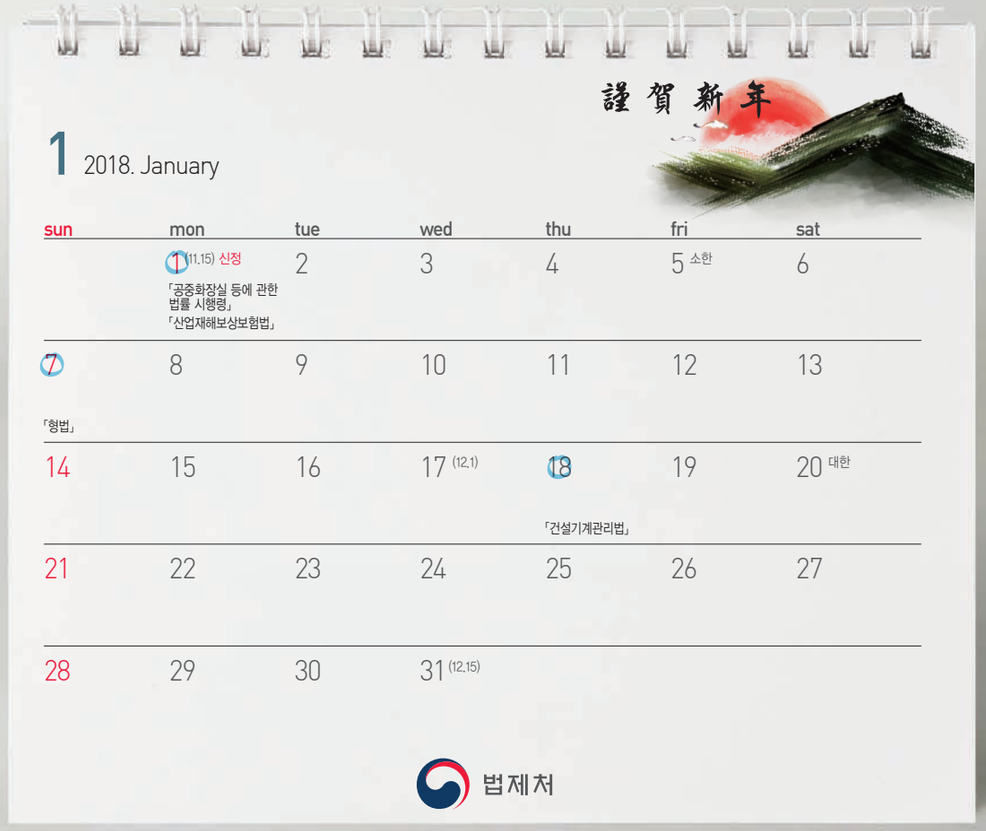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 수	공제금액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다만, 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새 법령 소개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을 변경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형법」)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을 변경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 시행

-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도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악취없는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청소나 보수를 위해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나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의 강화(제7조)

1)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도록 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별표)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하도록 함.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도록 함.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월 1일 시행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 교사 · 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앞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형법」 1월 7일 시행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제62조제1항).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1월 18일 시행

-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새 법령 소개

1월 시행법령 목록 (2017. 12. 14.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0호	보건복지부	1. 1.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956호	국토교통부	1. 1.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국토교통부	1. 1.
4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40호	보건복지부	1. 1.
5	고등교육법	법률	제11212호	교육부	1. 1.
6	고등교육법	법률	제14054호	교육부	1. 1.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2호	고용노동부	1. 1.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행정안전부	1. 1.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70호	인사혁신처	1. 1.
1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0호	법무부	1. 1.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행정안전부	1. 1.
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5호	국토교통부	1. 1.
1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59호	교육부	1. 1.
1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7호	보건복지부	1. 1.
1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17호	보건복지부	1. 1.
16	국세기본법	법률	제14382호	기획재정부	1. 1.
17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3호	기획재정부	1. 1.
1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0호	국토교통부	1. 1.
19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912호	국방부	1. 1.
20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5호	국방부	1. 1.
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91호	국방부	1. 1.
22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174호	국방부	1. 1.
23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38호	국방부	1. 1.
24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66호	국방부	1. 1.
2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471호	공정거래위원회 등	1. 1.
2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21호	환경부	1. 1.
2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6호	기상청	1. 1.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보건복지부	1. 1.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0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보건복지부	1. 1.
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14983호	농림축산식품부	1. 1.
3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특허청	1. 1.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2호	문화재청	1. 1.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8호	국토교통부	1. 1.
3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359호	산림청	1. 1.
3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47호	법원행정처	1. 1.
37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23호	법원행정처	1. 1.
38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제2756호	법원행정처	1. 1.
39	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	기획재정부	1. 1.
40	산림기본법	법률	제15079호	산림청	1. 1.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4933호	고용노동부	1. 1.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388호	기획재정부	1. 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기획재정부	1. 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5호	기획재정부	1. 1.
4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19호	환경부	1. 1.
46	소득세법	법률	제13558호	기획재정부	1. 1.
47	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	기획재정부	1. 1.
48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기획재정부	1. 1.
49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기획재정부	1. 1.
5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2호	기획재정부	1. 1.
5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9호	기획재정부	1. 1.
5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청	1. 1.
5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67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5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1호	환경부	1. 1.
5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령	제940호	국방부	1. 1.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8호	보건복지부	1. 1.
5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85호	보건복지부	1. 1.
58	의무 ·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42호	국방부	1. 1.
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국토교통부	1. 1.
60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국토교통부	1. 1.
6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국토교통부	1. 1.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84호	금융위원회	1. 1.
63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57호	환경부	1. 1.
64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4229호	환경부	1. 1.
6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01호	환경부	1. 1.

새 법령 소개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6호	환경부	1. 1.
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66호	행정안전부	1. 1.
68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행정안전부	1. 1.
69	지방세법	법률	제14475호	행정안전부	1. 1.
70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476호	행정안전부	1. 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1호	행정안전부	1. 1.
7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49호	국토교통부	1. 1.
7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6호	국토교통부	1. 1.
7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42호	국토교통부	1. 1.
75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40호	교육부	1. 1.
76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3호	특허청	1. 1.
77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5103호	환경부	1. 1.
7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국토교통부	1. 1.
79	해운법	법률	제14748호	해양수산부	1. 1.
80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해양수산부	1. 1.
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1호	환경부	1. 1.
82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232호	환경부	1. 1.
8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0호	환경부	1. 1.
8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부	1. 1.
8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08호	산업통상자원부	1. 1.
8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농림축산식품부	1. 4.
8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3733호	산업통상자원부	1. 7.
88	형법	법률	제13719호	법무부	1. 7.
89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법무부	1. 7.
9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경찰청	1.10.
9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국토교통부	1.10.
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179호	산업통상자원부	1.13.
93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534호	국토교통부	1.18.
94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707호	국토교통부	1.18.
95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847호	국토교통부	1.18.
96	교통안전법	법률	제14538호	국토교통부	1.18.
97	교통안전법	법률	제14712호	국토교통부	1.18.
98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30호	국토교통부	1.18.
9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4호	환경부	1.18.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5호	환경부	1.18.
101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	환경부	1.18.
1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고용노동부	1.18.
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45호	국토교통부	1.18.
104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9호	환경부	1.18.
105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546호	국토교통부	1.18.
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553호	행정안전부	1.18.
107	철도안전법	법률	제14548호	국토교통부	1.18.
1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04호	환경부	1.18.
10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4호	국토교통부	1.25.
1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7호	국토교통부	1.25.
111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90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
112	국민연금법	법률	제14921호	보건복지부	1.25.
113	노인복지법	법률	제14922호	보건복지부	1.25.
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국토교통부	1.25.
1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948호	국토교통부	1.25.
1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13호	행정안전부	1.25.
11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9호	보건복지부	1.25.
1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04호	교육부	1.25.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웹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령정보 서비스 모델 모색해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정보관리원**, 학계 · 민간 **전문가와 11월 29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9년째를 맞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과 스낵컬처*로 대변되는 시대흐름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 스낵컬처: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 제1세션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령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진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고, ㈜와이즈넛 권우영 차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박진호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달로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 또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법령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세션은 **스낵컬처의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 및 홍보방안**을 주제로 ㈜카카오 이한빛 차장이 발표하고, 언론진흥재단 최일도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홍보 마케팅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생활법령정보를 **카드형 콘텐츠 · 웹툰** 등 시각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올해 세미나는 **생활법령정보 기자단,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초청**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인 블로그에 생활법령정보/정부정책에 대한 기사 작성 · 게재를 위해 활동하는 기자단, 학생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

-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늘 국민 요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는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을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한 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서비스이다.
  - 매일 3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가정 법률, 창업, 소비자, 복지, 근로 · 노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286건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총 12개의 언어**로 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 중이다.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

– 법제처,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법제 발전 방안을 공유 ·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
  -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추진된다.

- 법제처는 **11월 2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2017년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등 **연구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등 지방자치법령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 이 날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 참여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 첫 번째 주제에서는 최환용 본부장이 발제자로서 지난 지방자치 26여 년간의 자치권한 배분의 현실을 평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 · 재정 · 입법 등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 나아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로운 입법을 위하여 **법령 제 · 개정 시 조례 위임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 두 번째 주제의 발제자인 **류지웅 박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제2 국무회의'신설처럼 정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정비과제 발굴의 필수적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 "이번 세미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이 공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Legislation Newsletter

김외숙 법제처장,
육군 제11항공단 위문 방문

–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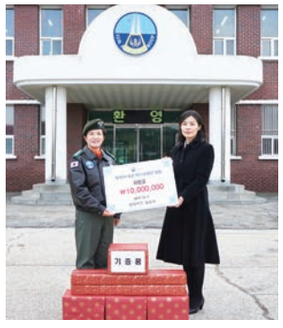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12월 1일(금)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육군 제11항공단을 방문하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11항공단 소개 브리핑을 받은 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제11항공단에 감사하다”면서,
  –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와 빈틈없는 경계태세로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굳건히 수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법제처 이용안내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문의 : 법제정보담당관실
TEL. 044-200-6789

법제처 SNS

- 여기로law www.moleg.go.kr/herelaw
- moleg.tistory.com
- www.facebook.com/Moleg.Korea
- NAVER 포스트 post.naver.com/molegin
- twitter.com/Molegtwit
- YouTube www.youtube.com/user/moleg1234



■ 문의 : 대변인실
TEL. 044-200-65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공정보 |

음식점(창업 · 운영), 아파트생활, 인터넷 이용자, 전자금융범죄, 부동산 경매, 임산부, 이혼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정보

| 이용방법 |

http://easylaw.go.kr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찾기쉬운 법령정보 검색



■ 문의 : 법제정보담당관실
TEL. 044-200-6790

민원인의 해석요청 절차

민원인은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아래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 법제처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후, 그 **중앙행정 기관**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

02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 → 민원인 → 법제처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그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03 민원인 → 1개월 × 중앙행정기관 → 민원인 → 법제처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 해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 문의 : 법령해석총괄과
TEL. 044-200-6707

사전입법지원 제도 이용안내

| 사전입법지원 요청권자 |

- 사전입법지원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중앙 행정기관 법령안 담당자

| 사전입법지원 대상 |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 공약 · 국정과제 이행 법령안, 일자리 창출 관련법령안
- 다수 부처 관련 융합 · 복합 법률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
- 불합리한 차별 등 정비대상 법령안

■ 문의 : 법제지원총괄과
TEL. 044-200-6834

자치법규 지원제도 이용안내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

- 자치법규의 입안 ·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자문 제공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

- 지자체의 조례 전수를 검토하여 정비과제 발굴, 정비안 제공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

- 지자체의 제정 ·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 · 해석, 규제개혁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지원

| 표준(모델)조례안 검토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표준(모델) 조례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합검토 의견을 제공

■ 문의 : 자치법제지원과
TEL. 044-200-6761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원도
GANGWON PROVINCE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2017년 9월 5일부터 선착순 판매중

문의 1544-4226

NAVER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